

## 산업안전기술연구센터 규정

호서대학교(이하 “호서대”라 한다)와 한국기계연구원(이하 “기계(연)”이라 한다)은 산업안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호서대학교 부설 산업안전기술연구센터(이하 “연구센터”라 한다)를 호서대 내에 설치,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.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 1 조 (명칭 및 소재지)** 이 연구센터는 한국기계연구원·호서대학교 산업안전기술연구센터라 칭하며 호서대 내에 둔다.

**제 2 조 (설치 목적)** 연구센터는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안전기술과 관련한 연구 및 시험, 검사를 수행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 조 (사업)** 연구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산업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험검사
2. 협동연구 및 인력교류
3. 학위과정 논문 연구지도
4.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및 지원
5. 기술정보 교류
6. 각종 교육 훈련과정
7. 기타 연구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### 제 2 장 조직 및 임원

**제 4 조 (연구센터 요원)** 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, 기술 및 행정원을 둘 수 있다.

**제 5 조 (조직)**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센터에 각종 연구실 등을 둘 수 있다.

**제 6 조 (임원)** ①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 1명, 명예소장 약간 명을 호서대 교수 중에서 호서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인 연구원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연임할 수 있다.

③ 각 부서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**제 7 조 (임원의 임무)** 각 부서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, 인사, 경리, 기타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### 제 3 장 자문위원회

**제 8 조 (자문위원회)** 연구센터의 주요정책 및 사업성과 사항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각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# 제 4 장 운영위원회

**제 9 조 (운영위원회)**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, 호서대 총장이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 다만, 기계(연)원장의 위촉이 있을 경우

이를 반영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회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연구센터의 조직, 운영체제 및 기본계획 수립
  - 2. 연구방향 설정
  - 3. 주요사업과제 선정 및 조정
  - 4. 연구센터의 운영규정
  - 5. 예산 및 결산
  - 6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제 5 장 연구개발 및 시험검사

- 제10조 (연구개발 및 시험검사)** ① 연구센터는 산업안전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, 기계(연)이 광산보안법 및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행하는 각종 형식승인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관계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.
- ② 법령에 의하여 기계(연)의 명의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에 따른 책임은 연구소장에게 있다.
- ③ 제2항의 보완을 위하여 기계(연)에서는 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④ 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구비, 시험검사 수수료 또는 이익금 등은 연구센터의 운영경비로 사용한다.

## 제 6 장 재 정

**제11조 (재원)**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각종 기금,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연구비, 시험 검사 수수료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**제12조 (예산 및 결산)**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**제13조 (예산집행)** 예산의 집행은 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, 년1회 총장의 감사를 받는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